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4. 15 선고 2021가단83243(본소), 2022가단429(반소) 판결
[물품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541,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4,022,54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철물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고흥군으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위 건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다.

다. E과 F은 2020. 1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E과 F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E과 F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21. 3. 30.경과 2021. 4. 7.경에는 피고에게 합계 977,46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상당의 펜치, 니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와 E, F은 2021. 2. 22.경 원고가 E과 F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E 43,236,765원, F 2,327,16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는 E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20,000,000원은 2021. 2. 28.까지, 나머지 채무는 2021. 3. 31.까지 변제하고,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2021.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피고는 2021. 4. 30.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1,541,385원[물품대금 977,460원 + 채권양도일 기준 공사대금 45,563,925원(43,236,765원 +

2,327,160원) - 기지급 금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1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E과 F이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인 반면, 갑 5호증의 1, 2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E과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서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원고, E, F,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피고가 E, F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그 공사와 관련하여 E, F에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갑 제5호증의 1, 2를 교부받아서 확인하여 보니 위 서면에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의 지위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갑 제3호증의 1과 갑 제4호증의 1을 다시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가 E과 F이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그 양도계약의 효력, 공사대금채무의 존부에 관하여서만 다투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E과 F이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② 채권양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의 E,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반소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1. 4. 30.에 지급한 15,000,000원에서 물품대금 977,4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22,54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E, F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과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채권양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채권양도금액 중 2021. 2. 28.까지 20,000,000원을, 2021. 3. 31.까지 잔여금액을 입금함으로써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한다’,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채권양도금액을 2021. 3. 31.까지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위 지급기일과 지급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채권양도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발생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변제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끝으로 E, F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피고의 E,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E, F이 2020. 12.경 하도급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E, F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2개월 이상 경과한 2021. 2. 22.에 체결된 사실,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작성한 서류(갑 제5호증의 1, 2)에 43,236,765원과 2,327,160원이라는 공사대금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21. 4. 30.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 F이 2021. 12.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피고의 E,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E, F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위 회사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